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(임의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40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1.

발 의 자 : 임의자 · 안상훈 · 이인선
최보운 · 배준영 · 권영세
서명옥 · 우재준 · 최은석
송언석 · 박대출 · 강승규
추경호 · 김위상 · 이종배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면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기금운용계획안 또한 이에 준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별 · 기금별 지출한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,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만 제출하고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고 있어 한정된 예산안 ·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기간 동안 국회가 분야별 자원배분의 적정성 및 세부사업별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데 한계가 있음.

이에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중앙관서별 ·

기금별 지출한도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, 정부 또는 기금관리 주체가 제출하는 예산안·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에 중앙관서별·기금별 지출한도와 예산 및 기금요구서를 포함하도록 하여 예산 편성 과정을 투명화 하고, 국회가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제17호 및 제18호 신설 등).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2항 중 “통보할 수 있다”를 “통보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34조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7. 제29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에 포함하여 통보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

18.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예산요구서

제66조제3항 중 “통보할 수 있다”를 “통보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71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제66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포함하여 통보한 기금별 지출한도

9.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안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예산안편성지침·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통보 및 예산안·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제2항, 제34조, 제66조제3항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9조(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) ① (생략)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<u>통보할 수 있다.</u>	제29조(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통보하여야 한다.</u>
제34조(예산안의 첨부서류)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1. ~ 16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4조(예산안의 첨부서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16. (현행과 같음) <u>17. 제29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에 포함하여 통보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</u>
<u><신설></u>	<u>18.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예산요구서</u>
제66조(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) ①·② (생략)	제66조(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
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
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연계
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
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
에 기금별 지출한도를 포함하
여 통보할 수 있다.

④ ~ ⑧ (생략)

제71조(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)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(이하 “기금운용계획안등”이라 한다)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~ 7. (생략)

<신설>

③ -----

통보하여야 한다.

④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71조(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) -----

-----.
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제66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

정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안

작성지침에 포함하여 통보한

기금별 지출한도

<u><신 설></u>	9.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안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